

의안번호	제 641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발의자	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1월 11일

#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이숙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1
----------	-----

발의연월일 : 2021년 1월 11일  
발 의 자 : 이숙애, 박형용, 이상욱,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연종석

### 1. 제안이유

-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으로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안 제2조)
- 다. 자원순환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 (안 제3조)
- 라. 도지사, 사업자, 도민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 마. 자원순환연차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바.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 사.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 아.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 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 차. 자원순환 활성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5호
- 다. 협의 :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하여야 한다.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5년 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 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 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 장 등이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자원순환 성과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폐기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2.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 시설
-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제8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9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내 자원순환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사업에 한한다.)

3. 법 제20조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도내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도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4.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육 등) 도지사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다.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 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집행계획의 수립과 제14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3.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인 에너지 회수율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원순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도에 필요한 제도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표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기술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 5. <생략>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생략>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생략>

#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수행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 수당
  -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근거 시·도지사는 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후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

##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 요인 : 자원순환시행계획 연구용역비 등 124,550천원 정도 소요
  - 추계의 전제
    - 자원순환시행계획 연구용역 1식('22년도 예산 수립 후 진행)
    -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22년도 예산 수립 후 진행)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 개최 및 수당(5명) 지급
  - 추계결과
    - 자원순환시행계획 연구용역 : 104,400천원
    -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 20,000천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 위원 수당 : 150천원
    - 산출기초
      - 자원순환시행계획 연구용역 104,400천원 x 1식 = 104,400천원
- [기수립 용역비('18~'22년도) 104,400천원 소요 참고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20,000천원 x 1식 = 20,000천원  
[기수립 용역비('18~'22년도) 20,000천원 소요 참고 작성]
- 위원회 위원 수당 30천원 x 5명 = 150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기 수립 자원순환시행계획은 '18~'22년까지로 '23~'27년 시행계획 재수립하여야 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124,550				124,550
자원순환시행계획 연구용역		104,400				104,400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 평가 연구용역		20,000				20,000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위원회 수당 등		150				150
재원 조달						
자체 재원	연구 용역	124,400				124,400
	수당	150				15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